

7. 都市計劃法中 改正法律(案) 立法豫告

財政經濟院公告 第1997-36號 1997. 5. 7

주 요 골 자

- 가. 현재 지방에 위임하여 운용하고 있는 용도지역·지구의 결정 등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토록 함.
- 나. 풍치지구, 고도지구 등 현행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개 용도지구외에 “경관지구” 등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지구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성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가능케 함.
- 다. 시장, 종합의료시설, 주차장 등 이 법 및 개별법에 의해 이원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당해 시설의 입지·규모 등에 대하여만 도시계획결정을 받으면 개별법에 의한 인·허가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.
- 라. 도로, 상·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,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관련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- 마. 시장·군수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만 있는 도시계획 입안권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, 폐기물처리시설 등 광역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가능케 함.

바. 10년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도로·공원등 도시 계획시설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최소화 및 관련 민원해소를 도모함.

사. 현행의 도·시·구 뿐만 아니라 군지역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자율적인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.

아. 도시계획법령 위반자에 대한 인·허가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,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

개정이유

지방자치제의 실시, 도농통합시의 지정등 지방화·광역화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, 도시계획결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함과 아울러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,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위반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그동안 동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기 위한 것임.